

전주지방법원 2020. 8. 19 선고 2020나65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0. 8. 19 선고 2020나653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0. 1. 8 선고 2019가단27569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도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변론 종결 2020. 7. 15

판결 선고 2020. 8. 19

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. 1. 8. 선고 2019가단27569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,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목록(1)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9. 10. 14. 접수 제 9530 호로 마친 1/2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'피고 B을 '피고 C으로 경정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원고에게,

- ① 피고 B는 별지 목록 (1) (2)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8. 8. 1. 접수 제 7698 호로 마친 1/2지분 이전등기의,
- ② 피고 C은 별지 목록 (2)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. 3. 26. 접수 제 2427 호로 마친 1/2지분 이전등기의,
- ③ 피고 C 은 별지 목록 (1)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. 10. 14. 접수제 9530 호로 마친 1/2지분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③항 청구를 추가하였다).

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,제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 1, 2, 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, 제1심 판결이유 중①제2면 제9행의 '2019. 3. 26. 별지 목록 (2)에 나오는 각 부동산'을 '2019. 3. 26.및 2019. 10. 14. 별지 목록 (1) (2)에 나오는 각 부동산'으로 고치고,② 제2면 제10행 및 제18행의 '피고 이을 '피고 C'으로 고치고,③ 제2면 제18행의 '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'를 '이 사건 부동산'으로 고치는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(위①항 및③항의 고치는 부분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판결이유를 추가한 내용임)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

원고의 청구 취지①항, ②항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,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취지③항청구에 따라 말소등기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

별지